

<명동 공고 제2022-22호>

##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시송달 공고

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1. 대상자

대상자		주소	발급기간	공고사유
성명	생년월일			
나*현	2005.07.04.	서울특별시 종구 퇴계로18길 **	2022.08.01~ 2023.07.31.	폐문부재

2. 신청장소 :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### 3. 발급안내

- 1)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- 2)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(사진이 부착된 것)
  - 증명서가 없는 경우, 주민등록지 관할 이·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(신분증 지참)하여 확인 가능
- 3)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(3cm×4cm 또는 3.5cm× 4.5cm).
  - 다만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 추가 제출해야 함
  -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4)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등이 직접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.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

\*위 기한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,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담당자 : 김재원 (문의전화 : 02-3396-6569)

2022. 7. 21  
명동장